

‘부당 권유로 고객에게 손실을 입힌 증권사 직원은 책임져야’

■글/김성천<한국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실>

98년말 이후 계속된 주가 폭등으로 대학생에서부터 농어촌

의 주민들까지 주식 투자에 빠져들면서 투기 장세가 위험 수위에 이르러 후유증도 적지 않게 나타난다. 최근 주가가 1000을 사이에 두고 급등락하면서 뒤늦게 뛰어들어 투자자 중에는 밤잠을 못 이루는 사람도 있다. 최근 증권사 직원의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을 내세운 투자 권유로 투자자가 손실을 본 경우, 불법 행위 책임 및 사용자 책임이 성립하는가의 여부에 대한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견해가 나뉜 판례가 나왔다.

판례

개인 투자자 L씨는 평소 거래하던 은행의 차장으로부터 H증권 S지점장인 K씨를 소개 받았다. 계약 기간 1년으로 연 30%의 수익금을 보장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 각서를 교부 받은 후, 주식 매매 거래 계좌 설정 약정을 체결하고 여유 자금을 예치했다. K씨는 L씨의 주식 예탁금을 가지고 일일 매매를 하였는데 2개월쯤 매입 주식의 가격이 급등하자 L씨는 이를 전량 팔아 정산해줄 것을 요구했다. K씨는 계약 관계를 들어 정산 요구를 거절했다.

오히려 추가로 돈을 예치하면 1개월 이내에 20%의 수익금을 보장하겠다고 제안, 이에 L씨는 예탁금을 추가로 예치했다. K씨는 1개월 뒤 추가 예탁금 및 수익금과 기존 예탁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이행 각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K씨가 집중 매입한 주식들이 갑자기 큰 폭으로 하락, L씨는 큰 손실을 입었다. 이에 L씨는 법원에 K씨의 불법 행위 책임과 H증권의 사용자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고등법원은 K씨는 물론 H증권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 ‘K씨가 이례적인 고율의 투자 수익 보장을 약정 받고 포괄적인 일일 매매를 위탁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상당한 투자 위험을 수반하는 투기에 가까운 공격적인 투자 또는 다소 빈번한 주식 매매를 예상하고 이를 용인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점을 들었다. 덧붙여 ‘K씨가 나름대로 수집한 주식 정보에 의하여 집중 투자한 것인데, 예상과는 달리 주가가 갑자기 하락하는 바람에 투자 원금에도 못 미치는 손실이 발생한 것이지, 주가의 급락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L씨는 상고했고 대법원은 고등법원과 달리 K씨의 불법 행위 책임은 물론 H증권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그 이유로 ‘L씨와 K씨의 주식 매매 거래 계좌 설정 약정은 투자 수익 보장 약정과 포괄적 일일 매매 약정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거래 경위와 거래 방법, 고객인 원고의 투자 상황 거래에 따르는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설명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L씨에 대한 K씨의 투자 권유 행위는 증권 거래 행위에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 형성을 방해하고, 나아가 L씨의 투자 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들었다.

이번 판례는 투자 소비자 개인은 자기 결정에 의한 자기 책임을 부담해야 하지만, 부당 투자 권유 등에 의한 손실은 적극적으로 증권사 직원·증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한 점에서 주목된다. ☎